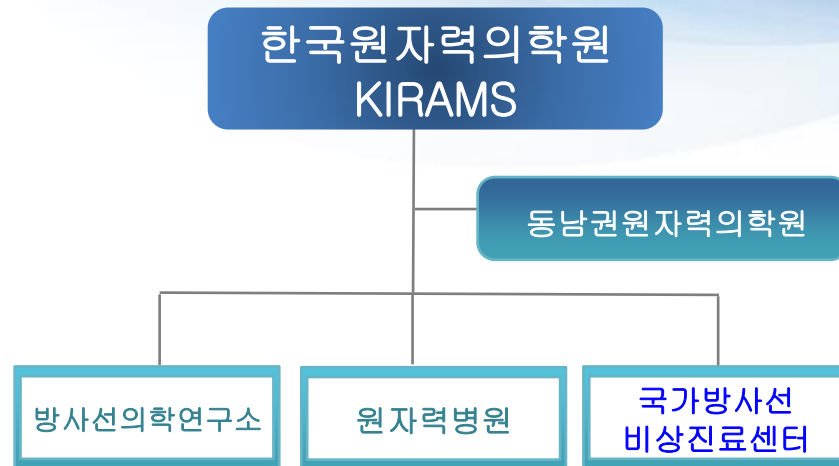


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

◆ 설립근거

-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 2 (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)
-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」 제39조 (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)



◆ 주요임무

- 전국 24개 병원 대상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
-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군,경,소방요원 대상 교육/훈련
- 24시간 방사선 사고 접수 및 방사선영향클리닉 운영
- 물리학적·생물학적 선량평가 수행
- 고선량 피폭 및 저선량 인체영향 연구 수행
-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진료분야 심사·검사 및 훈련평가 지원

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

◆ 주요연혁

2002	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조직 구축
2005	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
2015	생물학적선량평가 국제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 (ISO 15189, APLAC-MRA)
2016	IAEA 역량개발센터 지정 (IAEA Capacity Building Centre)
2017	WHO-REMPAN 협력센터 지정 (WHO Collaborating Centre for Radiati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)

